

세무회계저널
제17권 제3호 2016년 6월 pp.157~187
한국세무학회

준정부기관의 K-IFRS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세무회계 이슈에 관한 연구

김수성* · 최원석**

<요 약>

본 연구는 준정부기관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orea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이하 'K-IFRS'라 함.)을 도입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기업인 보험회사와 준정부기관인 연금기금의 예를 들어 K-IFRS 도입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본 것이다. K-IFRS의 핵심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라 할 수 있는데, 보험회사와 연금기금은 투자일임자산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하였다. 보험회사에서는 투자일임의 방식을 포기하고 집합투자기구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피한 반면, 연금기금은 투자일임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한 예외를 둔 것이다. 이 둘은 양자 간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렇지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세무적인 이슈는 크게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준정부기관의 K-IFRS 도입 사례를 분석하고 2016년부터 K-IFRS를 도입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지방공기업에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작성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수동적인 투자일임방식의 투자 건에 대하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서 일반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같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보다는 연결재무제표 적용기준을 보다 완화하여 K-IFRS의 전면도입이 아닌 부분적 도입에 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연결재무제표 도입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K-IFRS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K-IFRS 도입의 실익을 파악하여 지방공기업에 적합한 K-IFRS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사전준비와 점검이 필요함을 모색해 보았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주제어> 연결재무제표, K-IFRS,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세무학박사, mercury@tp.or.kr, 주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wschoi@uos.ac.kr, 교신저자

I. 서 론

국제회계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경제적 실질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준정부기관에서도 2013년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orea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이하 ‘K-IFRS’라 함.)을 전면적으로 도입·적용하였다. 그러나 준정부기관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K-IFRS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기관은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에 이르고 있다. 또한 K-IFRS를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어 준정부기관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꺼려하고 있으며 각 기관마다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K-IFRS를 기 도입했던 일반영리 기업중의 하나인 보험회사와 준정부기관의 하나인 연금기금 가운데 S공단의 사례를 통해 K-IFRS 도입·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준정부기관의 하나인 S공단의 K-IFRS 도입 경험을 토대로 K-IFRS를 새롭게 적용·도입하여야 하는 지방공기업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보험회사와 연금기금은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자의 하나로 적립된 기금에 대하여 자금운용을 하고 있는 바, 자금운용 방식 중에서 아웃소싱을 가장 많이 하는 기관 중 하나에 해당된다. 최근 연금기금이나 보험회사는 아웃소싱(Out-Sourcing)의 기금운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외부 운용사를 통해 투자일임의 형태로 위탁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는 자금운용 방법의 일환으로 투자일임(Wrap Account) 계약을 자산운용사와 체결하여 외부위탁 운용하는 위탁형 아웃소싱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방식은 기관투자자가 100%의 투자지분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보험회사와 연금기금이 아웃소싱 투자를 할 경우에는 K-IFRS에서 요구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와 연금기금은 K-IFRS 적용과정 상에서 다른 방식으로 K-IFRS를 적용하게 되었다. 즉, 보험회사에서는 투자일임자산에 대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투자일임방식을 포기하고 집합투자기구의 방식으로 투자운용 형태를 전환하게 된 것이다. K-IFRS에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강요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보험회사는 대부분이 주식회사로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기존의 투자일임 형태로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K-IFRS 적용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하여 투자일임 방식의 투자방식을 아웃소싱의 형태로 투자를 전환한 것이다. 반면, 연금기금에서는 K-IFRS 도입 과정을 살펴볼 때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다. 외관상으로 볼 때 양자 간의 투자는 동일한 형태의 투자라고 보여 질 수 있지만, 회계적이나 세무적으로 많은 차이점이 있다.

회계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세무적 입장에서는 투자일임의 형태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게 된다.¹⁾ 그리고 운용측면에서 살펴볼 때에도 투자일임의 형태는 수익증권을 증권회사 등에 판매하는 데 소요되는 별도의 판매수수료인 판매보수가 소요되지 않는 반면, 집합투자기구 형태로 투자할 경우에는 판매회사에 지급하는 보수가 별도로 지급되어 상대적으로 보수(비용) 측면에서 살펴볼 때 보험회사가 연금기금에 비하여 다소 불리한 입장에서 놓여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금기의 하나인 S공단의 사례를 예로 들어 연결재무제표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금기금과 유사한 일반기업의 하나인 보험회사의 사례와 연금기금 사례의 상호비교를 통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합투자기구와 투자일임에 관한 세무회계적인 측면에서의 유·불리를 파악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함에 있어서 보험회사와 연금기금 등 각 기관의 도입과 적용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고 연결재무제표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특히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투자일임에 대한 회계처리과정에서 보험회사에서는 재무제표 작성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전액 집합투자기구(수익증권)의 형태로 투자방식을 전환하였다. 그렇지만, 연금기금 등과 같은 준정부기관은 투자일임의 형태를 유지하기는 하였으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K-IFRS를 적용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제반 사항을 참고하여 2016년부터 K-IFRS를 도입 적용하여야 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K-IFRS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K-IFRS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K-IFRS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투자방식의 변경에 따른 세부담의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의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S공단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S공단이 K-IFRS를 도입한 과정과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S공단이 K-IFRS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한 회계상의 영향에 대해 검토한다. 제Ⅳ장에서는 지방공기업의 K-IFRS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개선안을 논의하고자 하며 특히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언급한다.

1) 일부 비영리법인에 있어서 투자일임방식을 포기하고 집합투자기구 방식으로 전환하여 세제상의 이점을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게 되었다. 이는 비영리법인이 자금운용이익에서 발생한 소득을 투자일임방식에서는 소득구분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있으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로 전환하게 되면 배당소득으로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검토

1. K-IFRS 적용의 주요 영향 분석

이하에서는 일반적으로 K-GAAP과 K-IFRS 적용으로 인한 차이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K-GAAP과 K-IFRS 상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항목에 대한 개본 개념을 우선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K-GAAP과 K-IFRS 적용의 주요항목

구 분	K-GAAP	K-IFRS
공시체계	규칙 중심 회계(일관성 중시)개별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체계	원칙 중심 회계(실질의 반영)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체계
대손충당금	추정에 의한 충당금 설정 허용	객관적 대손사유 발생 시 대손충당금 설정 허용
확정급여채무	일시퇴직 가정 퇴직급여충당금설정	보험수리적 방식에 의해 부채 계상
경영평가성과급 부채	실제 지급 시 비용처리	근무용역 제공한 기간에 부채 인식
소송충당부채	인식하지 않음	소송사건에 대해 충당부채 인식
유형자산 상각방법	정률법(기계장치, 공기구비품)	정액법(기계장치, 공기구비품)
투자부동산	원가법만 인정	원가법과 공정가치법 중 선택
법인세효과	해당사항 없음	상기 조정사항에 대한 법인세 인식
국제회계기준 최초채택	해당사항 없음	일부 토지에 대해 전환일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적용
임대보증금 등	명목가액으로 계상	공정가치(현재가치) 평가
자산재평가	원가모형	주기적 재평가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처분 또는 폐기 예정 자산	1년 이내 즉시 매각, 확약
정부 보조금	수익	자산차감 또는 이연수익 사용
지분법 적용대상	중대한 영향력 판단 시 투자회사의 지배회사를 통한 간접지분을 포함	중대한 영향력 판단 시 투자회사의 지배회사를 통한 간접지분을 제외
리스 관련 조정	운용리스	금융리스
금융비용의 자본화	비용처리	적격자산의 장부가액이자 자산처리
유형자산	원가법만 인정	원가법과 재평가법 중 선택

주) 황인태 · 한봉희 · 강선민, 2009, 『국제회계기준 적용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경제연구원 용역 보고서

준정부기관이 K-IFRS 적용시에 재무제표 및 회계처리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표 1>에서와 같이 알 수 있다. 이와 동일하게 2016년에 K-IFRS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IFRS에서는 재무제표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정형화된 양식을 제시할 뿐이며 계정과목 구분에 대하여도 상세표시의 원칙만 제시할 뿐 세부적인 사항은 주식사항으로 구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다. K-IFRS에서는 원칙만 제시되고 있고 세부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국제회계기준의 적용기업과 미적용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연금기금의 경우에도 일부 연금기금에 대하여는 K-IFRS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사례도 있다. 또한, K-IFRS에서는 재무상태표 배열 방법 등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표시방법에서도 관련 선택범위를 확대하였기 때문에 K-IFRS 적용 기업의 재무제표 간 비교가능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K-IFRS에서는 공통된 기준의 제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에도 K-IFRS를 도입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 수치의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무제표 작성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의 수치가 크게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는 다른 회계 금액이 발생하여 재무정보의 시계열의 연속성이 단절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그러므로 K-IFRS 도입 전·후의 재무제표 간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도 K-IFRS에서 가장 크게 변화하는 한 가지는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기존과는 다른 체계의 재무제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S공단과 같이 지방공기업인 지방공사·공단은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별재무제표를 향후에는 연결기준의 재무제표 작성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성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방공기업간 경영평가 및 예산 편성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다음 <표 2>는 K-IFRS 적용 시에 나타나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나타나는 효과로는 재무상태표의 구성 내용이 변경되는 영향이 있다.

K-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기존의 자산·부채의 구성현황이 새롭게 변경되는 영향이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투자 대상물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면, K-IFRS에서는 세부적인 내역을 상세히 분류하여 각 계정과목에 맞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K-IFRS 적용의 가장 큰 이슈로는 공정가치 평가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다. 기존에 적용해오던 개별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로의 재작성이 필요하다. 만일 지방공기업이 재무적 투자 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에 K-IFRS 적용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한 것이다.

S공단은 K-IFRS 도입 과정에서 연결재무제표의 도입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하였다. 연결재무제표는 피투자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각각 인식하고 지배회사 지분은 비지배지분으로 인식한다. 투자일임계약은 현행 재무제표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지만, 연결재무제표 상에는 개별 항목별로 별도로 인식하게 된다. S공단은 K-IFRS 적용시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신규도입에 따른 업무프로세스의 신설과 결산일정에 대한 투자자산

에 대한 투자내역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고려사항 들은 적기에 투자자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파악하여 세부정보를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투자 운용부서의 투자자산의 성격 파악이 매우 중요한 반면 이에 대한 성격의 규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결산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조직 및 인원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S공단은 K-IFRS 적용시 현실적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처리할 것을 고려하였다.

〈표 2〉 K-IFRS 적용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종 전	K-IFRS	영 향
최초적용 간주 원가	해당사항 없음	최초 적용 시 소급적용 않는 대신 유형자산 등을 공정가액으로 재평가	일반적으로 자산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 증가
단기종업원 급여	명확한 규정 없으며, 실무적으로 금액 확정시점에 비용 계상	미사용 연월차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근로제공기간에 비용 계상	부채(미지급비용)가 증가하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적음
퇴직급여 충당부채	회계연도 말 현재 지급의무 확정분만 부채 계상	개인별 추정 퇴직시점의 예상 퇴직금 중 회계연도말까지 발생한 부분을 부채로 계상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증가하며 퇴직급여 발생액도 증가
감가상각 내용연수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별표의 내용연수 적용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별표의 내용연수가 실질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적용불가	일반적으로 건물·구축물은 내용연수 증가, 기계장치 등은 감소
구성요소별 감가상각	유형자산 일부의 내용연수·상각방법이 달리 적용될 필요가 있어 별도 유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별도 계상여부에 관계없이 유형자산 일부의 원가가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중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자산 일부의 내용연수가 감소하여 감가상각비 증가

출처 : 박정규. 2012. “지방공기업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관한 검토”. 지방공기업평가원

우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려면 자산운용사의 결산방법이 S공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S공단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려면 자산 운용사의 결산재무제표 또한 K-IFRS 적용에 의한 결산재무제표 수치가 필요한 것이다. 자산운용사의 결산재무제표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별도의 K-IFRS에 의한 재무제표를 추가 작성해야 하는 추가적인 비용 발생의 문제점이 있게 된다. 그리고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결산재무제표 수치의 제공이 제때에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여부가 관건이었다.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

의 재무제표 작성일과 연결재무제표 작성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자산운용사의 결산재무제표 수치의 제공시기는 터무니없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정보 수령시기는 12월말 기준으로 3월 이후에나 입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S공단은 운용사의 결산재무제표를 1월 초순에 입수하여 K-IFRS에 의한 회계처리와 국가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부서의 인력과 조직 또한 필요하였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이슈사항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이슈사항 및 대응 방안

① 신규도입에 따른 업무프로세스 신설 • 연결대상 피투자회사 및 비연결구조화 기업의 재무제표수보 방법 및 시기 등의 결정 • 연결대상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의 검증(회계정책 통일 및 공정가치 평가 포함) 및 입력 프로세스 신설 • 연결대상 피투자회사와의 내부거래 식별 및 회계처리 프로세스 신설 •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 주석 작성 프로세스 신설	② 결산일정의 적시성 확보 • 연결대상 피투자회사의 결산 재무제표 입수 지연으로 공단의 결산일정이 지체될 가능성 존재 • 연결대상 피투자회사의 특성 상 공단의 결산 일정에 맞추어 재무제표를 수보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음.
③ 결산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정비 •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하거나,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운용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할 결산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 확보 •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 주석을 총괄할 전문인력의 확보	④ 타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 고려 • 연결대상 피투자회사 및 투자일임계약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별 항목들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시 추가 비용의 발생 가능성 존재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평가시 평가항목에 K-IFRS 재무제표 반영 여부 검토

2. K-IFRS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검토

가. K-IFRS 요구사항

K-GAAP에서는 지배기업이 직·간접적으로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그 기업을 지배한다고 보아 연결대상으로 보았다. 그러나 K-IFRS에서는 ‘의사결정권의 과반수 이상’이란 용어가 제외되어 지분율이나 실질지배력, 또는 잠재적 의결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범위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K-IFRS에서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

련활동에 대해서 재화·용역의 판매, 금융자산 관리, 자산 취득·처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여 기술하고 있어서, 이러한 관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피투자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구조화기업 및 특수목적기업 등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대하여도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K-GAAP에 비해 K-IFRS에서는 구조화기업을 ‘의결권이나 그와 유사한 권리는 주된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설계된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제약된 활동 및 한정된 특수 목적 등 구조화기업의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화기구, 자산유동화 자금조달 및 일부 투자펀드 등을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K-GAAP에 비하여 연결대상 범위가 광범위하게 증가하게 된다. 또한 K-IFRS에서는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구조화기업의 경우에도 지분의 성격(목적, 규모, 활동, 자금조달방법 등)과 위험의 성격을 공시하여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피투자기업이 연결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업이 직·간접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바, 문단 7에는 투자자가 다음을 모두 갖는 경우에만 투자자는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 피투자자에 대한 힘(문단 10~14 참조),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문단 15와 16 참조),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문단 17과 18 참조)을 말한다.

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

K-IFRS 제1112호에서는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K-IFRS 제1112호 문단 B22에는 구조화기업을 명시하고 있다.²⁾ 구조화기업은 다음의 특징이나 특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지고 있다. (1) 제약된 활동, (2) 한정된 특수 목적(예 : 절세효과를 위한 리스, 연구개발 활동의 수행, 자본이나 자금의 원천을 기업에게 제공하거나 구조화기업의 자산과 관련된 위험과 보상을 투자자에게 이전함으로써 투자자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 (3) 후순위의 재무지원 없이는 구조화기업의 활동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불충분한 자본, (4) 신용위험이나 그 밖의 위험을 집중시키는 복수의 계약상 연계된 상품의 형태로 투자자에게 자금조달(트랜치)을 의미한다.

또한, 문단 B23에는 구조화기업으로 간주되는 기업의 예는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는

2) 구조화 기업은 기업을 누가 지배하는지를 결정할 때, 의결권이나 그와 유사한 권리는 주된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설계(예 : 의결권이 관리 업무에만 관계되어 있고 관련활동은 계약상 약정에 따라 지시되는 경우)된 기업을 말한다. 문단 B22~B24는 구조화기업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것은 아니다. (1) 증권화 기구, (2) 자산유동화 자금조달, (3) 일부 투자펀드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정의하고 있다. 문단 5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예 :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투자자가 해당 피투자자의 주식을 상당한 부분 또는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문단 16에서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문단 17~19에 따른 면제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투자상품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S공단의 2013년과 2014년 말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현황 및 K-IFRS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공단의 연결여부 검토대상의 재무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S공단의 연결여부 검토대상 재무현황

(단위 : 원)

계정과목	2014년말	2013년말
당좌자산		
－ 기타단기매매증권	0	18,630,000
－ 기타단기매매증권/대체	76,510,653,241	68,743,378,892
－ 기타매도가능증권(유)	2,249,585,099,523	2,873,210,941,770
－ 기타매도가능증권(유)/대체	143,750,028,041	107,344,699,136
소 계	2,469,845,780,805	3,049,317,649,798
투자자산		
－ 매도가능주식/대체	169,198,640,763	144,872,665,499
－ 기타매도가능증권	657,865,616,384	0
－ 기타매도가능증권/대체	1,202,589,843,568	1,060,188,189,129
소 계	2,029,654,100,715	1,205,060,854,628
합 계	4,499,499,881,520	4,254,378,504,426

S공단의 연결여부 검토대상 투자유형은 크게 1) SOC, 2) 부동산투자, 3) PEF, 4) 수익증권, 5) 특정금전신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2014년말 기준 각 투자유형 별 K-IFRS 상 연결여부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³⁾

가. SOC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문단 10에 따르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은 ‘관련 활동(즉,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SOC사업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사회인프라 건설 등 특정한 사업목적을 수행한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S공단을 포함한 투자자들이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분을 및 대출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S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내역 중에서 SOC에 해당하는 투자자산중에서 지분율이 20% 이상인 ○○천안논산고속도로 및 ○○○도로사모특별자산신탁은 정부가 최소수입 운영보증(Minimum Revenue Guarantee, MRG)을 하고 있어 사업장에 부도 등 Credit Event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변동이익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SOC 사업 중 K-IFRS 재무제표 작성 시 연결대상 및 지분법 적용대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다.

나. 부동산 투자

S공단은 PF(Project Finance)를 포함한 부동산투자를 하고 있다. 이는 대체투자자산의 성격으로서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대상자산 중에서 전체 16건 중 10건은 지분율 및 대출비율이 30%에 미달하여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결여부 검토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고려하였다. 지분율 및 대출비율이 30% 이상인 부동산투자에 대해 정관 및 대출약정서 등을 통해 연결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구 ○○동 오피스 빌딩의 투자는 대출비율이 30%를 초과하므로 ‘변동이익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출약정서 상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대주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힘’의 소유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최대 대주가 ○○○증권사로서 S공단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3) S공단이 투자하고 있는 다양한 대체투자 자산은 K-IFRS에서 요구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고려되고 있는 ‘힘’, ‘변동이익’ 및 ‘능력’ 요건을 모두 만족하게 되면 연결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S공단이 투자하고 있는 SOC, 부동산투자,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집합투자기공인 수익증권 등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보유자산명을 언급하기 보다는 익명으로 언급하고자 하였다.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연결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밖에 ○○○부동산투자회사를 들 수 있다. 지분율이 53.67%이고 정관 상 투자결정은 이사회 결정사항이므로 이사회 지배여부에 따라 ‘힘’(지배력) 행사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감사포함)에 대해 주주의 2/3 동의로 선임이 가능하고, 주주의 3/4 동의로 해임이 가능하므로 S공단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연결대상에서 역시 제외되었다. 그렇지만 해당 피투자회사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투자자인 S공단이 주주총회에서 20%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사회 이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사모부동산신탁1호와 ○○사모특별1-1호의 경우에도 지분율 100%인 사모단독펀드로서 S공단이 직접적인 투자 및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지 않는 대체투자자산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 투자 및 운용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업자가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배력 판단을 위해 대리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문단 18). 당해 사모단독펀드의 경우 수익자의 과반수 또는 전원의 동의로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및 투자신탁 해지가 가능하므로 K-IFRS 제1110호 문단 B64와 B65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본인으로서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힘’과 ‘변동이익’ 요건 모두 만족하며 연결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는 투자자산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사모부동산투자신탁 5호 및 6호가 있다. 5호의 경우 지분율 100%인 사모단독펀드로서 ‘힘’, ‘변동이익’, 및 ‘능력’ 요건을 모두 만족하므로 연결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반면, 6호는 지분율이 67.6%로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변경을 위해 수익자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지배력을 보유한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PEF

S공단이 투자하고 있는 실물자산인 Commodity를 포함한 PEF투자 전체 45건 중 40건의 경우 지분율이 30%에 미달하여 ‘힘’(지배력)을 가지고 있거나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결여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지분율이 30% 이상인 PEF투자에 대해 정관 및 주주간 협약서 등을 통해 연결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투자신탁 5-3호가 있는 바, 지분율 100%인 사모단독으로서 수익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가능하고 전원의 동의로 투자신탁 해지 가능하므로 ‘힘’과 ‘변동이익’ 요건 모두 만족하는 것이다. 또한 대리인이 아닌 본인으로서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연결대상에 포함하였다. 반면, ○○사모M&A투자회사가 있는 바, 지분율 50%인 사모단독펀드로 회사의 해산 및 자본감소 등 주총 의결 모두 과반수 요건이므로 S공단이 ‘힘’(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해당 피투자회사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사회 이사 등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분법 적용을 배제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분을 30% 이상이나 유한책임사원(LP)로서 모든 업무는 업무집행사원 및 무한책임사원(GP)이 투자의사결정 등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GP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최대주주가 S공단이 아닌 다른 투자자이므로 S공단은 ‘힘’(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했다.

라. 수익증권

아웃소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은 모두 S공단이 100% 수익자로 되어 있는 사모단독펀드이며, 크게 사모단독펀드와 투자일임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표준약관 등을 통해 연결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모단독펀드

100% 수익자이므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되어 있으며, 표준약관 상 수익자 본인(‘S공단’)의 동의로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및 투자신탁 해지가 가능하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110호 문단 B64/65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본인으로서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힘’과 ‘변동이익’ 요건 모두 만족하며 연결대상에 포함된다. 투자일임계약은 단순한 계약의 형태이므로, 계약의 실질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에 대하여 투자자가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K-IFRS에서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 금융자산 및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최초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금융부채, 금융자산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세부구성내역을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주석공시토록 하였다.

(2) 특정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시하고, 수익자의 요청으로 신탁 중도해지 가능하므로 ‘힘’과 ‘변동이익’ 요건 모두 만족하며, 대리인이 아닌 본인으로서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연결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위에서는 여러 가지 투자대상 자산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의 표시대상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범위를 파악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힘이나, 능력, 변동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연결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S공단의 K-IFRS 최초 도입연도인 2013년 시점 이전인 2012년말 기준으로 각 투자유형 별 K-IFRS 상 연결여부 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S연금지급금의 2012년도말 연결 등 투자대상 현황

(단위 : 건수)

투자형태	투자건수	연결	지분법	투자일임	비연결 구조화기업공시
SOC	12	—	—	—	12
부동산투자	16	3	1	—	12
PEF	42	1	—	—	41
수익증권	52	20	—	32	—
특정금전신탁	7	7	—	—	—
합 계	129	31	1	32	65

자료 : S연금지급금 내부 자료를 활용함.

4. 보험회사와 연기금의 연결대상 범위 차이 발생

가. 연기금의 수익증권 연결범위 검토

현재 연기금이 투자하고 있는 수익증권에 대하여 연결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가 의문이다. K-GAAP에서는 포괄적 운용지시가 있으면 연결범위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K-IFRS에서는 그러한 예외처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연결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투자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갖고 있지 않아도 연결 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K-IFRS에서는 해지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결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계약서 상 만기 때까지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 해지권한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K-IFRS의 연결재무제표 구성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각 투자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K-IFRS의 회계처리에서는 지분법 및 다른 유가증권 처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속기업과 연결 기준서는 양자 간에 차이가 있으나, 회계담당자의 업무량에는 큰 차이가 없다. K-GAAP에서도 집합투자기구(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원가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렇듯 K-IFRS 적용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자 하면 각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를 모두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S공단에서는 K-IFRS를 도입할 시점에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할 시스템의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게다가 개별적인 투자처의 투자대상 항목을 하나하나 투자 대상별로 취합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것이었다.

S공단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50개가 넘는 아웃소싱 운용 자산에 대해 수작업으로 각 투자기업에 대한 개별 재무제표의 정보를 취합하여 이를 통합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해외투자 운용의 경우에는 개별 투자자산에 대한 개별 구성항목을 취합하는 데에만 해도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만큼 해외자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적시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또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및 사모펀드의 재무제표도 분기단위로는 산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S공단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기말 결산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에 각 투자처로부터 투자정보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받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취합된 투자대상의 정보를 통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더라도 공정가치에 대해 평가기관의 공정가액과 피투자회사 재무제표의 장부가액에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하여 투자처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연기금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적기에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 보험회사의 K-IFRS 연결재무제표 작성방법

간접투자의 형태로는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한 투자와 투자일임 계약방식을 통한 간접운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집합투자기구는 과거 수익증권 형태로 투자되던 방법을 말한다. 집합투자기구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우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일 것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과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일반 영리기업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도입한 바 있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방식은 연기금의 자산운용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K-IFRS를 도입 적용함에 있어서 연기금과 보험회사의 연결재무제표 도입은 각각 달리 적용하기로 하였다. 보험회사는 투자되어 있는 일임자산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운용방식의 형태를 투자일임방식에서 집합투자기구의 방식으로 전환을 하였다. 사모단독과 유사한 투자일임의 방식은 보험회사가 직접 투자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투자자산이 아웃소싱의 형태로 투자되더라도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로 투자된 수익증권의 구성항목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파악하여 이를 연결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번거롭고 적기에 투자 정보의 획득이 매우 어려운 면이 있다. K-IFRS의 도입적용을 함에 있어서 투자정보의 적시성과 지배종속 관계의 정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의무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 보험회사에서는 자금운용 방법의 하나로 투자일임 운용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K-IFRS

4)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은 2010.2.18일에 삭제되었다.

도입으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어려움 때문에 투자일임 운용방법을 포기하고 대거 집합투자 기구방식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반하여 연기금은 투자일임의 운용방법을 그대로 고수 하면서 단지 K-IFRS의 도입 적용에 있어서 연결재무제표의 예외규정을 두고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K-IFRS를 적용하였다. 일부 연기금을 제외한 준정부기관에서는 연결결산 프로세스를 구축하지 아니하고 수작업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기관도 있다. 대부분의 준정부기관은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일부 준정부기관은 종속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스템 등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준정부기관은 극소수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구조가 단순하고 내부거래 제거 등 연결조정 사항이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반 영리법인에서는 K-IFRS을 준용하기 위하여 투자운용방법을 변경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준정부기관에서는 회계처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투자일임에 대하여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였던 것이다. 새롭게 도입된 회계처리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일반 영리법인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수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준정부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고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

일반 영리법인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상의 형평성이 위배되고 있다. 일반 영리법인은 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하기 위하여 투자운용방법을 변경을 통하여 회계처리를 준수하려고 하였다. 즉, <표 4>의 사례와 같이 보험회사가 투자를 하였다면 보험회사는 작성된 재무제표가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외부회계 감사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이를 주주총회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이 수반되므로 투자일임 방법에서 수익증권 방법으로 운용방법 변경을 통하여 회계기준을 준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준정부기관은 <표 4>의 사례와 같이 투자되었더라도 각 투자처의 재무현황을 입수하기가 곤란할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예외규정을 두어 기존의 방법대로 회계처리 한다. 새롭게 적용된 회계처리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일반 영리법인에서는 국제회계기준 적용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준정부기관은 이에 대한 사항을 경미하게 여기고 예외규정을 두어 불완전한 회계처리를 하여 왔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투자일임자산에 대하여 투자건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예외적용으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금기금과 보험사와의 회계처리상 형평성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주식회사로서 외부감사의 대상이지만, 연금기금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 예외규정을 두어 기획재정부의 승인만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간의 차별이 발생하였다.

Ⅲ. 연기금과 보험회사의 K-IFRS 도입에 따른 세무회계상의 문제점

1. 준정부기관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문제점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피하기 위하여 연기금금은 예외규정을 두었던 반면, 2011년에 이미 K-IFRS를 도입하였던 보험회사에서는 연결재무제표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투자일임 형태를 수익증권의 운용형태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양자 간에 회계와 세무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바, 이하에서는 회계와 세무상의 문제점과 영향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국제회계기준 적용 실태를 살펴보고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준정부기관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 및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실무적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로는 크게 연결재무제표 작성 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국제회계기준 적용기관과 미적용 기관과의 비교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점, 공정가치 평가 적용상의 문제점 및 기타사항으로 경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소규모 준정부기관의 퇴직급여 시행상의 문제점, 재무보고 목적 이외의 적용목적의 문제점과 국제회계기준 정착을 위한 인원보충이 미흡한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가. 연결 및 지분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

국제회계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경제적 실질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준정부기관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준정부기관의 하나인 연기금의 예를 들어 연결재무제표 작성상의 문제점과 인적·물적 설비 보완의 문제점 및 연결결산 재무제표 작성 상의 문제점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속하고 있는 연기금유형의 17개 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속하고 있는 연기금유형 17개 기관은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의하여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음에 따라 각 투자처에 대한 재무제표를 하나로 취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투자지분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범위가 달라지는 바, 연결기준과 투자일임 및 지분법 적용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투자일임과 연결 및 지분법 회계의 개념과 공통점 및 차이점 비교

구분	투자일임	연결기준	지분법(관계기업투자)
개념	투자일임계약은 금융상품이 아닌 단순한 계약의 형태이므로 투자일임계약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별로 회계처리하는 방법	기업이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지배기업(모회사)의 재무제표에 합산하여 표시하는 방법	기업이 피투자자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을 경우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
공통점	- 주요 변경내용 : 투자일임계약을 분리하여 재무제표에 반영 - 회계정책 : 투자일임계약의 구성항목은 공단의 국제회계기준 정책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 필요사항 : 투자일임계약의 재무제표 및 공시사항 구성 자료 - 내부거래 제거 등의 추가 회계처리 필요함	- 주요 변경내용 :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공단 재무제표에 합산 - 회계정책 : 종속회사 재무제표는 공단의 국제회계기준 정책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 필요사항 : 종속회사의 재무제표 및 공시사항 구성 자료 - 내부거래 제거 등의 추가 회계처리 필요함	- 회계정책 : 피투자회사 재무제표는 공단의 국제회계기준 정책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 필요사항 : 종속회사의 재무제표 및 공시사항 구성 자료 - 내부거래 제거 등의 추가 회계처리 필요함
차이점	별도재무제표에 먼저 반영하여 공단의 결산서가 산출되어야 함	별도재무제표 작성 후 연결대상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연결재무제표가 산출됨	- 별도재무제표 : 취득원가 또는 공정가치 중 선택하여 반영 가능 - 연결재무제표 : 지분법으로 반영(지분율만큼 반영) - 별도와 연결재무제표에 모두 반영되거나 반영되는 방법이 상이함

연금기금은 K-IFRS 적용에 따른 연결 및 지분법 적용시 상당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연기금의 경우에는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는 바, 각 투자안에 대한 결산 마감일이 결산주체인 S공단의 결산일과 동일하지 않는다면 결산일정의 적시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즉, 연기금은 12월에 결산을 하지만 사모투자전문회사인 PEF가 3월에 결산을 한다면 결산월의 불일치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가 용이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연결회계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운용상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연결재무제표는 연기금이 투자한 모든 투자대상을 하나로 집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인 바, 투자대상 중 어느 하나가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한 결산 자료를 지연하여 보낸다면 더욱 연결재무

제표 작성이 곤란하다. 또한, 연기금의 경우에는 잦은 투자의 반복으로 실질지배력이 수시로 변동되는 상황 하에서 재무제표의 작성대상 인지를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S공단과 같이 연금기금의 경우 다양한 투자대상이 있는 바, 대규모의 기금을 활용하여 다양한 투자일임이나 집합투자기구 및 사모간접투자기구인 PEF 등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투자대상을 연결재무제표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각 투자처로부터 구체적인 재무제표 자료를 입수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결산일정에 맞추어 세부적인 결산사항을 입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밖에, 경미한 사항이지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담당자의 국제 회계기준의 연결에 관한 회계지식의 부족으로 내부거래의 제거 등 연결회계에만 존재하는 회계 처리에 숙달되지 못하여 합리적으로 작성하지 못하는 업무담당자의 이해부족도 있을 수 있다.

나. 연결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시기상의 문제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대부분은 K-IFRS 적용 대상임에 따라 국가회계기준 적용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K-IFRS 적용 대상임과 동시에 국가회계기준을 적용받는 기관이므로 두 가지 회계기준 적용시 국가회계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일부 준정부기관의 경우 통상 결산월이 12월 마감으로 3월말에 결산일정이 완료되지만 일부 연기금의 준정부기관은 국제회계기준 결산일과는 무관하게 국가회계기준 결산일정에 맞추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유로 결산마감일에 맞추어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투자대상의 세부자료를 취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국가회계기준 재무제표 작성시 대부분 결산 마감후 익년도 1월 중순에 결산을 마무리하게 되고 결산에 대한 외부회계 감사를 수감하여 기획재정부의 국가통합 재무제표에 반영토록 하고 있어 촉박한 일정상으로 종속회사와 각종 투자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결산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기금으로 투자된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결산 자료를 수집하여 연기금의 결산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하나, 일정상 불가능하여 연기금의 준정부기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K-IFRS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S공단의 경우 기금결산 일정에 맞물려 익년도 1월 중반에 걸쳐 결산을 확정하고 이를 국가회계로 전환하여 기금결산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결산부서의 업무가 과거에 비하여 현격히 가중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결산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결 및 지분법을 적용하고 이를 평가할 인원을 충원하는 방안을 고려 해 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인원을 보충한 준정부기관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준정부기관인 연기금이 투자한 투자회사와 투자대상회사간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준정부기관이 투자계정과의 매핑하는 업무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회계담당자가 해야 하므로 현업의 업무부담 증가로 인해 일정에 차질을 줄 가능성이 있다. 연기금은 과거 자본조정에

있었던 기타매도가능증권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세부항목별로 세분화해야 하며 이를 평가하는 평가단계가 필요하므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피투자회사 평가 관련 추가비용의 발생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자료 수집의 현실적인 문제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대부분은 다양한 투자로 인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상의 문제점과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예외규정을 두는 문제점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운용사의 결산방법이 공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가능하다. 가령 사모투자전문회사인 PEF 펀드를 투자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공단의 결산월은 12월인데, 사모투자회사의 결산월이 6월이라면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곤란하다. 연금기금의 재무제표가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기 위해서는 투자회사인 연금기금과 유사한 K-IFRS를 적용하여야만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용이하다. 만일 투자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별도의 K-IFRS에 의한 재무제표를 추가 작성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투자회사가 K-IFRS에 의한 결산재무제표를 적기에 제공하여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즉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용사의 결산재무제표의 수령 시기는 현재 3월 이후 입수가 가능하나, K-IFRS 뿐만 아니라 국가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연금기금이 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적어도 1월 초순에 입수하여야 1월 중순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결산감사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현업부서 담당자의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및 확인시 임의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결산부서의 회계담당자는 투자된 자산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불가능하여 성격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운용사 자료에 대한 확인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

3. 투자회사와 연결회사간의 상이한 회계처리 방식으로 인한 문제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 연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일임자산은 직접 보유자산과 동일하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 바, 운용사의 결산방법이 공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운용사의 결산재무제표가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운용사의 결산재무제표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별도의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추가 작성해야 하므로 추가비용의 발생 문제가 있게 되다.

운용사의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결산재무제표의 제공 여부가 관건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운용사의 결

산재무제표의 수령시기(현재 3월 이후 입수 가능) 또한 문제로 들 수 있다. 공단이 운용사의 결산재무제표를 1월 초순에 입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연기금의 현업부서의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및 확인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장기간을 요하기 때문이다.

4. 연기금과 보험회사의 K-IFRS 적용 사례검토 비교

가. 양자간의 세제 취급상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

보험회사의 경우를 살펴볼 때 투자일임계약에 의한 자산의 간접운용방식은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운용방식에 비하여 판매수수료의 절감이라는 유리한 효과가 있는 반면 연기금기금에 비하여 세무상 법인세 부과라는 불리한 효과가 있다는 특성이 있다. 현재 S연기금기금을 비롯한 기금을 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은 자산의 간접운용방식을 투자일임계약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투자일임계약방식의 투자에서 집합투자기구방식으로 변경을 결정한 것이다. 다음 <표 6>은 투자일임 전환과 유지에 따른 세부담 차이 분석을 나타낸 것이다.

<표 6> 투자일임 전환과 유지에 따른 세부담 차이 분석

구 분	집합투자기구 투자시	투자일임 투자시
판매보수료	• 판매보수료 소요	• 판매보수료 절감
회계처리	• 투자부동산으로 처리함	•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함.
연결회계 처리여부	• 연결회계처리 하지 않음. 투자부동산 으로 처리함	• 투자건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하여야 함.
소득유형	• 배당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각종 매매이익
준비금 설정한도	• 배당소득으로 보아 100% 준비금 설정	• 이자 · 배당소득은 100% 준비금 설정 • 매매이익은 50% 준비금 설정
세무상 이월결손금 존재시의 준비금 설정	• 이월결손금과 무관하게 전액 준비금 설정 (사례) 당해 매매이익이 1,000억원 발생,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800억원이 있을 경 우에도 매매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보므로 전액 준비금 설정	• 매매이익은 세무상 이월결손금 한도까 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불가 (사례) 당해 매매이익이 1,000억원 발생,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800억원이 있을 경 우에는 200억원의 50%인 100억원만 준 비금 설정
관리상 장 · 단점	• 판매보수료 비용 소요	• 단독펀드 투자 가능 • 펀드 관리가 용이함
기타	• 매매이익 과세대상 불포함	• 매매이익 과세대상 포함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상의 차이 발생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관투자자는 연금기금과 변액펀드의 대표주자인 보험회사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금기금과 보험회사가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기금을 비롯한 5개의 연금기금이 있고, 보험회사는 57개가 있다. 양자 간의 회사는 K-IFRS를 도입 적용함에 있어서 각각 다르게 반응을 보였다. 연금기금은 K-IFRS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피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을 방식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둔 반면, 보험회사에서는 100%투자되어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가 되는 투자일임방식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펀드의 일부에 투자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을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외관상 비슷한 거래이지만 세무회계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펀드 운용방식에 있어서도 판매보수료의 차이가 있게 된다.

운용방식의 차이로는 투자일임을 유지해온 연금기금의 경우에는 판매보수의 절감을 지속적으로 꾀할 수 있는 반면, 집합투자기구의 방식은 별도의 판매보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무상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다르게 나타난다. 보험회사에서는 법인세법 제30조의 책임준비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만, 연금기금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9조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수익을 가능한 한 많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기금 등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

최근 연금기금이 법인세법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하여 전액 설정토록 개정되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발생 수익의 100%에 상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주식매매이익, 채권매매이익 및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하여도 전액 설정토록 되었다. 그러나 연금기금 이외에 기타 기금의 경우라면 채권매매이익 등에 대하여는 발생 소득(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을 의미함)의 50% 상당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투자일임방식을 투자를 하게 되면 더욱 불리하게 된다. 이때에는 법인세법에서 설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과소설정분에 해당하는 법인세 금액과 판매보수료를 상호 비교하여 유불리를 판단해야 한다. 즉, 주식매매이익, 채권매매이익, 부동산 임대소득 등으로 3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한계세율만큼 300억원의 50%인 150억원에 대한 한계세율 22%에 상당하는 법인세 금액과 300억원에 대하여 지불하는 판매보수료의 절감금액과의 비교를 통하여 투자일임 방식의 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집합투자기구로 투자를 하였다면 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에는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판매보수료가 별도로 소요되므로 양자간의 절감금액의 분석과정이 필요하다.

보험회사와 같은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두가지의 운용상 세제효과가 동일하지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이 가능하므로 집합투자기구가 배분단계에서는 유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금기금의 경우에는 모든 이익에 대하여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이 가능하므로 투자일임의 경우에도 채권매매이익 등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설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하게 되면 별도의 판매보수료가 지불되는 면이 있다. 그러므로 연금기금의 경우에는 투자일임방식을 집합투자기구 방식으로 전환할 유인이 없게 된다. 그런 이유로 볼 때 연금기금에 비하여 보험회사가 상대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 적용할 경우에 연금기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세무보고 목적을 위한 K-IFRS 도입의 문제점

마지막으로 현재의 세법에 따른 세무보고 및 경영진 보고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K-IFRS뿐만 아니라 K-GAAP 기준의 재무정보가 관리되어야 하며 이들 재무정보를 GAAP별로 구분관리하기 위해서는 K-GAAP별로 정의된 복수의 회계장부가 필요하다. 또한 연결결산 프로세스의 자동화가 요구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전체 연결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연결대상 자료의 집계방법, GAAP의 조정주체, 내부거래관리방법, 모니터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연기금의 경우에는 재무보고의 목적보다는 세무보고의 목적과 경영평가의 목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을 도입적용하지 않은 일부기관의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 적용한 목적 자체가 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적용하기 보다는 국가회계기준에서 세무조정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세무목적으로 적용한 경우가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다.

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세부담 차이 발생의 사례 분석

연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있어서 자산의 간접운용방식을 투자일임계약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방식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각 방식간에 있어 세무상 효과 및 수수료 절감 효과 그리고 자산의 운용 실적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투자방식간 자산의 운용 실적에 미치는 효과는 계량적으로 측정할 없을 뿐 아니라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와 투자일임계약을 통한 투자간에 우월 관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바 아래에서는 세무상 효과와 수수료 절감 효과만을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다음 <표 7>은 집합투자기구방식과 투자일임계약방식간의 세액효과를 계량화하여 비교한 것이다. 집합투자기구와 투자일임계약자산에 각각 200억원을 투자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의 각각의 운용이익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 및 법인세 과세대상금액을 표기한 것이다. 보험회사와 연금기금이 투자일임자산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인세 과세대상 금액과 수수료 절감금액을 상

호 비교하여 투자시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하고자 할 것을 요한다. 이와 같은 특성은 투자일임자산 운용방식을 위축시키고 정부의 권고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일임 세제의 문제점을 살펴본다면 다음 <표 7>의 경우처럼 과세대상 금액이 확인이 차이가 나게 됨에 따라 판매보수 지급액이 주식과 채권의 매매이익에 대한 과세대상 금액에 포함하는 금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세부담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집합투자기구와 투자일임계약자산에 동시에 200억원을 동일하게 투자하였다고 가정을 해보자. 투자시 판매보수료의 절감금액은 2억원이라고 하고 50%의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채권(주식)매매이익의 준비금 과소설정으로 인해 과세되는 대상금액은 50억원으로서 결국 보수료 2억원에 비해 50억원에 한계세율(22%)을 곱한 금액인 11억원이 과세가 되어 약 9억원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사례는 준정부기관과 보험회사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적용에 따른 투자유형에 따라 법인세의 절감효과가 달라지는 간단한 사례에 해당된다. 다음 <표 7>은 투자일임과 집합투자기구 투자시의 과세상의 효과를 비교한 것이다.

<표 7> 보험회사의 투자일임계약과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시의 과세 금액 비교

구 분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자산
간접운용투자금액	200억원	200억원
주식·채권매매이익발생액(A)	100억원	100억원
판매보수료지급액(B)	2억원	0원
투자운용이익(A-B)	98억원	100억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C)	98억원	50억원
각사업연도소득금액(D=B-C)	0원	50억원
법인세과세대상금액(E=D-A)	0원	50억원
한계세율	22%	22%
납부할세액(F)	0원	11억원
판매보수지급액·절감액(G)	2억원	2억원
비용절감및과세효과(F-G)	2억원	9억원

IV. 지방공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1. 수동적인 투자일임은 연결재무제표 제외 방안 강구

연기금과 같이 수동적인 투자일임을 수행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 연기금의 투자형태를 볼 때 기업의 지배목적으로 투자하기 보다는 매매차익이나 운용측면에서 수익을 얻기 위하여 투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의 투자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다지 실익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도입을 유보하는 이원화된 회계처리 기준의 구축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일반기업과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및 비상장 기업에 대하여는 과거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도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적용을 이원화하여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칭 ‘공기업회계기준(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회계처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통해 기관 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전체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K-IFRS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에는 국제회계기준 적용 실용성이 미흡하고, 관련 비용만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 적용의 실용성 및 효과성이 존재하는가를 재검토 하여 K-IFRS 적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현실성 있는 회계기준(가칭 ‘공기업회계기준(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지방공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위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권고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업무부담과 행정비용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기관간 동일한 비교가능성을 위해서 미적용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적용하지 않은 연기금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같이 동일하게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토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장단점을 각각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제회계기준은 K-GAAP과 비교하여 연결재무제표 중심,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평가, 원칙중심의 회계처리, 주식 공시의 확대라는 특징이 있다. K-GAAP은 자회사의 실적과 자산을 별도로 보고하는 개별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 이었으나, K-IFRS에서는 자회사의 실적과 자산·부채도 모회사의 장부에 같이 포함시키는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연결

기준의 재무정보가 중요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K-GAAP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에 있어서 역사적원가법을 적용하였으나, 국제회계기준은 자산과 부채의 시장가치를 반영하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한다. 또한, K-GAAP은 개별 회계 사안에 대해 규칙중심의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으나, K-IFRS는 개별 회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이 회계처리의 기본 원칙에 따른 판단에 의해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원칙중심의 회계처리가 이루어진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K-IFRS는 원칙중심의 회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에 세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오히려 어려운 회계처리 내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적용하기 곤란한 회계처리는 회피하고 다른 방법으로 회계 처리할 유인이 존재한다.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회계처리에 따라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 재무정보를 연결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자회사 내지는 투자대상기업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와 상이할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연결의 기준을 생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부분 비상장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투자자에게 기업 재무상황 및 내재가치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공정가치 평가를 적극적으로 선택할 유인이 부족하다. 모든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유·무형자산, 투자부동산, 퇴직급여부채 등 대부분 항목에 공정가치를 적용하여 평가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자산항목에 대하여는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향후 연금기금간의 통일된 회계자료를 요구할 경우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기관의 특성 및 효익을 검토하여 문제점 및 불필요한 추가 비용 발생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국제회계기준 적용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유가 매우 낮고, 국제회계기준 전환에 따른 실익이 그다지 높지 않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제도이다. 수익성 추구 일반 사기업과 달리, 국가 예산이 지원되고 정보를 활용하는 이해관계자가 주로 시장(주주 등)이 아닌 정부 관계부처임을 감안하면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무리가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주요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즉, 정부 관계부처(공무원)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대한 이해도 역시 낮다. 기존 자료(전환 전) 요청에 따라 비교분석함에 따라 두 회계기준을 당분간 유지해야 하는 등 업무량이 늘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입하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3. 지방공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준 완화 검토

보험회사와 연기금은 우리나라의 기관투자자의 하나로서 대형연기금은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자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2016년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기로 한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공기업이

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처럼 투자를 주업으로 하기 보다는 하수장이나 시설관리공단 등으로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이 많다. 그런 이유로 보험회사나 연기금과 같이 투자유가증권 금액이 크지 않을뿐더러 지배목적으로 한 기업의 지분을 50%이상 투자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일반기업이나 S공단과 같은 준정부기관처럼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보다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6년도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 예정인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방공기업 역시 규모가 작으며,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능을 수반하고 있음에 따라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인한 비용 대비 효용이 미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공기업 또한 준정부기관과 같이 균등하게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지 않고 일부기관만 도입하고 일부기관은 도입하지 않으면 기관과 형평성과 비교가능성이 왜곡되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 지방공기업간 형평성을 위하여 도입을 균등하게 하거나 연결재무제표 등에 대하여는 도입을 하지 않고 기존의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지방공기업의 회계처리기준을 이원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및 비상장 기업에 대하여는 과거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기업의 회계처리기준(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에 대한 별도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공기업은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대한 필요성과 적용에 대한 효과가 이해관계자에게 크게 나타나고 있어 국제회계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반면, 지방공기업 등에 대하여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주권상장법인이 2개이며, 민영화대상기업은 4개인 반면, 지방공사·공단은 주권상장법인이나 상장예정기업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해외사업을 수행하거나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해외 이해관계자의 요구로 국제회계기준 적용이 강제화 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해외투자 및 자금조달과 관련하여서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12개 기관이며, 해외자금조달기관은 16개 기관이나, 지방공사·공단은 해외사업 수행을 하는 기관이 거의 없으며 자금조달 기업이 없는 실정으로 장래 해외사업수행이나 자금조달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적용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에는 영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연결회계 적용과 관련하여서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다수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회사 중에서도 민영화 대상기업을 12개나 보유하고 있으나, 지방공사 등의 경우에는 자회사를 보유한 기관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지방공기업의 회계처리기준을 이원화하여 관리함에 따라 장단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지방공기업 등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유보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기관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유보할 것인지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공기업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다면 전체 지방공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일부만 대상으로 할지의 여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공기업별 재무정보 비교가능성 측면 등을 고려할 경우 전체 지방공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기관의 규모 차이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지방공기업의 특성은 확연히 다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별도 지방공기업회계기준(안) 마련 필요

현재 상장기업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및 비상장 기업에 대하여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기 보다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 도입 적용을 이원화하여 가칭 ‘공기업회계기준(안)’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공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회계처리를 마련하여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무리하게 하기 보다는 분리된 회계기준을 마련하여 지방공기업에 부합한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2011년과 2013년에 K-IFRS를 도입 적용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도입 실태를 볼 때 국제회계기준 적용의 실용성이 기대수준보다 미흡하고, 관련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K-IFRS를 도입 적용하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상당히 많은 노력과 비용 그리고 시간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도입과 적용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과 비용 및 시간에 비하여 나타난 도입효과는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대다수의 지방공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능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방공기업 중에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자회사의 수가 소수이거나 자회사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으로 인한 회계의 변화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의 영향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기준을 도입하여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의무적으로 하기 보다는 선택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현행의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모두 동 규정을 따르고 있으나 현행의 회계기준은 민간기업과 상이한 공공부분의 회계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공공부분의 비효율적인 경영형태와 재무구조의 불투명성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

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은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감안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각 기관의 기관장에게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함으로서 연결재무제표에 적용에 관한 예외적용 기관이 많은 상황에 있다. 이로 인하여 연기금을 제외한 준정부기관 간에도 역시 통일된 회계처리가 부재하여 비교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K-IFRS를 신규 적용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 나타나는 효과로는 재무상태표의 구성 내용이 기존과는 다르게 대폭적으로 변경되는 영향이 있다. K-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기존의 자산·부채의 구성항목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면은 기존의 회계처리와는 다소 다른 형태의 회계지식을 요구할수도 있다. 경미한 사항이지만 보험회사와 연금기금의 회계담당자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담당자의 K-IFRS 연결회계처리에 관한 회계지식의 부족으로 내부거래의 제거 등 연결회계에만 존재하는 회계처리에 숙달되지 못하여 합리적으로 작성하지 못하는 업무담당자의 이해부족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생성과정이 되었다.

또한 K-IFRS를 도입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 영리법인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연금기금 간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형평성이 위배되었다. 보험회사와 같은 일반 영리법인은 K-IFRS를 준용하기 위하여 투자운용방법을 변경을 통하여 회계처리를 준수하려고 하였던 반면, 연금기금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예외규정을 두어 기존의 방법대로 회계처리를 하고자 하였다. 보험회사는 작성된 재무제표가 K-IFRS의 세부기준 등을 외부회계 감사인으로부터 반드시 인정받고 이를 주주총회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이 수반되므로 투자일임 방법에서 수익증권 방법으로 운용방법 변경을 통하여 K-IFRS를 준수한 것이다. 반면 S공단과 같은 연금기금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회계감사의 규제가 그다지 크지 않은 관계로 보험회사에 비하여 간단한 결산절차를 수반하게 되었다.

일반 영리법인에서는 국제회계기준 적용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회계투명성이 정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준정부기관은 이에 대한 사항을 경미하게 여기고 예외규정을 두어 불완전한 회계처리를 하여 왔다. 그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준정부기관은 투자일임계약자산에 대하여 각 투자대상 건마다 지분율을 파악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하여 예외규정 적용을 통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K-IFRS 도입 시점에 보험회사는 자금운용방법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는 투자일임방식을 활성화하여 왔으나, K-IFRS 적용으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어려움 때문에 투자일임 투자운용 방법을 포기하고 대부분의 투자일임 자산을 집합투자기구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회계적으로는 거의 동일하지만 세무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게 되며, 운용상의 측면에서도 볼 때 판매보수료가 지급되는 등 많은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기금과 보험사와의 회계처리상 형평성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양자간에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주된 이유로는 보험회사는 주식회사로서 외부감사의 대상에

해당되지만, 연금기금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 예외규정을 두어 기획재정부의 승인만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간의 차별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S공단과 같은 준정부기관은 종속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스템이 부재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이는 상대적으로 보험회사가 다소 불리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연금기금의 K-IFRS의 핵심인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산의 대부분이 일임자산으로서 100% 연금기금이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 내에 투자된 자산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적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게 된다.

둘째로 수동적인 투자일임방식의 투자 건에 대하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연금기금이나 보험기금의 대부분이 기업지배 구조의 목적으로 투자하기 보다는 매매차익이나 운용측면에서 수익을 얻기 위하여 투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K-IFRS 도입 적용시에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연금기금의 사례를 토대로 하여 지방공기업에서 2016년에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여야 하는데, 이때 K-IFRS의 핵심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하여 적용을 완화 할 것을 주장하였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일반기업과 같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보다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적용기준을 보다 완화하여 K-IFRS의 전면도입이 아닌 부분적 도입에 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비용 대비 효익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K-IFRS 도입을 함에 있어서 각 기관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고 향후 2016년부터 K-IFRS를 도입 적용하여야 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인 공공기관의 K-IFRS 도입실태를 파악해보고자 하였으며, K-IFRS 도입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는 연구의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K-IFRS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간의 재무제표의 통일성과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이와 같은 통일된 기준적용을 통하여 K-IFRS의 진실보한 회계처리의 발전과 진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공기업의 K-IFRS 도입 적용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 중에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따른 세무회계상의 문제에 국한하여 기술하였다. 향후에는 지방공기업의 K-IFRS 도입적용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의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 국제회계기준 홈페이지(<http://fss.or.kr/국제회계기준/main.jsp>)
- 기획재정부. 2010. 『공기업 국제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세부회계지침 마련을 위한 검토』 한국공인회계사회 용역보고서.
- 기획재정부. 2009. “공기업·준정부기관 국제회계기준 적용 방안”. 기획재정부 안내자료
- 김노창·한영은. 2011. “지방공기업 부채증가와 재정위기”,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제7권 제2호 : 103-127.
- 김문철·이준규. 2008.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의 필요성.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2호 : 155-185.
- 김이배·김갑순·정도진(2010), “IFRS 도입사례 : 이견사업-기업의 가치 증가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다-,” 회계저널 제19권 제2호 : 315-344.
- 박정규. 2012. 지방공기업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관한 검토. 지방공기업평가원 6월호 : 33-39.
- 박연희·조석희·박성진. 2013. 준정부기관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준비 사례 : A공단을 중심으로. KBR 제17권 제1호 : 1-39.
- 심호식·정대길·이창우. 201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효과 : 담배제조기업 사례,” 회계저널 제19권 제2호 : 183-217.
- 안옥진. 2011. 『공기업 국제회계기준 적용의 재무효과 분석』. 국회예산처.
- 안진회계법인. 2009.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방안 보고서. 기획재정부 용역보고서.
- 유순미·김현진. 201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건설업 도입 효과 : 건설기업 사례,” 회계저널 제19권 제2호 : 445-481.
- 이영한. 2007.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세법적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13권 제3호 : 189-228
- 이영한·최원석. 2009. “국제회계기준 적용이 금융기관의 세무조정과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6권 제4호 : 9-36.
- 전준구·김양환·이상철. 2010. “한국전력그룹의 IFRS 도입사례,” 회계저널 제19권 제2호 : 149-182.
- 황인태·한봉희·강선민. 2009. 『국제회계기준 적용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경제연구원 용역보고서.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7. “국제회계기준 적용시 상장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상장협 연구보고서 2007-2.

A Study on Tax Accounting Issues on Preparing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ccording to the Quasi-Government Agencies's Adoption of K-IFRS

Su Sung Kim* · Won Seok Choi**

〈Abstract〉

This study gives implications on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preparation of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rough analysing the case of quasi-government agencies's adoption of K-IFRS. This study addresses the necessities of allowing exceptions on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preparing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n the passive investment by investment commissioning system. This study claims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preparation of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not by full adoption of K-IFRS but by partial adoption of K-IFRS, in other words, easing the preparation standards of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preparation of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is study examines an insurance company's(general company) and pension fund's(Quasi-Government Agency) different reaction to the introduction of K-IFRS and gives implications on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preparation of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is study gives marginal contribution in minimizing side effects on adopting K-IFRS through seeking the introduction direction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addressing the necessities in advance preparation and check to make sure the suitability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through comprehending practical benefit on adopting K-IFRS.

〈Key word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K-IFRS,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Investment Commissioning,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 Ph.D. of Taxation, The Korean Teachers Pension, mercury@tp.or.kr, First 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wschoi@uos.ac.kr, Corresponding Author